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1. 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9월 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- “국민의료보험법”이 “국민건강보험법”으로, “의료보호법”이 “의료급여법”으로 법명이 변경되고, “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”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“전염병예방법”의 정기예방접종 종목 개정과 백신의 활용가능성 변화에 맞추어 유료접종의 종목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“국민의료보험법”을 “국민건강보험법”으로, “국민의료보험법 제38조”를 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”로, “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”를 “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”로, “1종 보호대상자,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”를 “1종 수급권자, 2종 수급권자”로 개정하고,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함 (제2조, 제3조, 별표)
- 유료접종대상종목 중 홍역, 볼거리, 풍진, 디프테리아, 렙토스피라증은 삭제하고, B형간염 임시예방접종은 유료접종항목에 추가하며, 수수료 금액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정하도록 함. (별표의 제3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